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12. 21. 판결선고	인
2001. 12. 21. 원본영수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0가합7582 손해배상(기)
2001가합4818(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종철, 우경선
피 고 고양시
대표자 시장 황교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변 론 종 결 2001.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만원 및 각 이에 대한 200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4/25는 원고들이, 1/2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만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2, 3, 7, 8, 24 매지 41, 갑제5호증의 4 내지 13, 갑제7호증의 1 내지 114,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 3, 을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고양시의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시는 산하 상수도사업소를 통하여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시는 수해방지를 위하여 관내 도촌천에 있는 백석교를 확장하기로 하고 건설업체에게 그 공사를 도급주어 시행하게 하였는바, 공사도중 공사장소에 송수관로가 매설되어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 송수관로를 다른 곳에 옮겨 설치할 필요가 있게 되자 시공업체가 송수관로 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공사기간 동안 단수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2000. 8. 24. 경부터 안내전단, 지역유선방송, 인터넷 등으로 고봉동, 식사동을 제외한 일산구 전지역 약 126,000세대에 대하여 2000. 8. 28. 9시부터 같은 달 29. 19시까지 34시간 동안 급수를 중단한다는 예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단수예정일 하루 전인 2000. 8. 27.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호우경보가 발령되기에 이르자 위 백석교 확장공사 업무를 관장하던 피고시 산하 도시건설국에서는 2000. 8. 28. 8시경 송수관로 이설공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수조치를 취소하기로 하고 단수조치 취소를 발표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비가 그치자 피고시의 도시건설국장, 상수도사업소장 등은 미리 예고된 단수조치시한인 2000. 8. 29. 19시까지 송수관로 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시 단수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2000. 8. 28. 14시경 인터넷, 유선방송 등으로 단수조치가 처음에 예고된 대로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렸

다.

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고시는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7시간 가량 늦은 2000. 8. 28. 16시경 시공업체에게 상수도사업소 직원의 협조를 받아 송수관로 이설공사를 실시하게 하였는바, 위 이설공사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송수모터를 정지하게 하고 송수차단밸브를 잠궜 송수관 내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한 뒤 송수관을 떼어 다른 장소에 옮기는 공사로서, 위와 같이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작된 데다, 송수차단밸브를 관리하는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고 현장에서 떠나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던 도시건설국 직원이 뒤늦게 송수관에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상수도사업소 직원의 관여없이 송수관 내의 압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송수차단밸브를 잠그도록 하다가 밸브의 핀을 이탈시켜 핀을 교체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에 따라 다음날인 2000. 8. 29. 6시경에야 송수차단작업이 완료되어 송수관을 옮겨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나 공사 시작 전에 미리 송수관의 용접을 하여 놓지 않아 공사 중에 용접공을 물색하여 용접작업을 하는 등으로 이설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는 다음날인 2000. 8. 30. 1시경에야 끝나게 되었다.

마. 그리하여 피고는 2000. 8. 30. 2시 30분경부터 다시 물공급을 시작하였으나, 오랜 시간 동안의 단수로 물수요가 몰리는 바람에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는 같은 날 밤까지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곳이 있었고, 일부 고지대 및 일산구 끝 지역에서는 2000. 9. 1. 3시경에야 물이 나오게 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단수기간 동안 주변 지역에서 물을 지원받아 소방관, 소속 직원등으로 하여금 급수차, 물탱크 등 급수장비를 동원하여 노약자, 임산부 등이 거주하는 가구나 급수 재개가 지연된 단독주택지역의 가구 등을 중심으로 비상급수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사. 수도법 제23조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수돗물의 공급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4조는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시의 수도급수조례 제25조는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

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하고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취소되었던 단수조치를 예고없이 실시하였고 단수기간도 처음에 예고되었던 기간보다 훨씬 길어져 식사준비, 세탁, 화장실 사용 등을 못하는 불편을 겪음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위자료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시는 수도사업을 직영하는 주체로서 수도법 및 피고시의 수도급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인 주민들에 대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 및 부득이한 이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여 급수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에 관한 사항을 예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는 피고시가 주민들에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필수재인 물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급수를 하고 공사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 급수를 일시 중단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 하여도 그 급수중단조치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공사진행계획 및 급수중단계획을 세우고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며 주민들이 그에 대비하여 사전에 물을 받아 놓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구역, 기간에 관한 사항을 예고할 의무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급수중단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신속히 알리고 비상급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시는 당초에 예고했던 단수조치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하면서 인터넷, 유선방송 등으로만 그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즉시 단수조치에 들어갔으며, 또한 예고된 단수기간이 이미 7시간 가량 경과하여 예정대로 단수조치를 시작하는 경우 예고된 기간을 초과하여 단수조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솔한 판단으로 그 기간 내에 단수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단수기한을 연장함이 없이 단수조치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송수관의 위치를 바꾸는 공사

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일반 건설업체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하도록 함에 있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자원공사 또는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책임을 맡은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소 등 관계기관, 부서의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전용접준비나 송수차단작업 등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예고된 단수기간이 훨씬 경과하도록 단수조치가 계속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인바, 먼저 피고시의 단수조치에 대한 안내는 단수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이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두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통, 반 조직을 통한 예고나 유인물의 배부 등 주민들 누구나가 쉽게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일부의 주민들만이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유선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예고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예고의 내용 역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솔한 것이라는 점, 또한 송수관로 이설공사에 있어서도 충분한 준비나 철저한 시공 등을 하지 못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심지어는 예정보다 이틀이나 늦게 급수가 재개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시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급수의무 및 급수중단시의 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의 불충분한 예고에 따른 갑작스러운 단수조치와 사전준비부족 등으로 인한 단수조치의 연장으로써 원고들이 식수부족, 세탁 및 화장실 사용 등 불편을 겪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시는 그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급수의무 및 급수중단시의 예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이 사건 단수조치가 있게 된 경위 및 공익상의 필요성, 피고시가 단수기간 중 비상급수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한 점, 원고들이 당초의 예고에 따라 단수에 대비한 물을 준비하여 놓아 그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원고별로 2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2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

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2. 21.

재판장 판사 박동영

 판사 이정훈

 판사 성충용